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0. 10 선고 2024가단2848 판결 [계약금 반환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가칭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

2. 주식회사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0. 10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5. 11.부터 2024. 6. 11.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이균부

별지